

【 4 】 양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2008. 1. .

제 출 자 양 주 시 장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2005.8.4 공포, 2006.1.1 시행)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2005.12.30 공포, 2006.1.1 시행)으로 인한 상위법 인용조문의 변경과
- 2007.11.1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추진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2006. 1. 1 시행)
- 보조금 지원시 조건 부여(안 제5조 제2항)
보조금 교부 결정·통지시 보조금에 대한 자체부담 및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안 제8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로 함.
- 위원회 구성 중 추진부서 변경에 따라 “간사” 변경(안 제10조 제5항)
주민자치담당에서 예산담당으로 함.

양주시 조례 제 호

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로 “제24조”를 “제29조”로 한다

제5조의 조명을 “(지원범위)”를 “(지원범위 및 조건)”로 하고,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통지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8조중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5항중 “주민자치담당”을 “예산담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기획감사담당관실
입 안 자	담당과장	기획감사담당관 백 윤 기
	담당주사	예산담당 신 대 수
	담당자	김경아(☎ 031-820-2066)

신 구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p> <p>제1조(목적) ----- <u>지방재정법 제14조</u> -- ----- <u>제24조의</u> ----- -----.</p> <p>제5조(지원범위) (생 략) <u>(신 설)</u></p> <p>제8조(심의) ----- <u>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u>----- -----.</p> <p>제10조(위원회 구성) ①(생 략) ②(생 략) ③(생 략) ④(생 략) ⑤----- <u>주민자치담당</u> ----- -----.</p> <p>⑥(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p> <p>제1조(목적) ----- 「<u>지방재정법</u>」 제17조 -- ----- <u>제29조의</u> ----- -----.</p> <p>제5조(지원범위 및 조건) ①(현행과 같음) ②<u>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통지함</u> <u>에</u> <u>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u> <u>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범위내에</u> <u>서</u> <u>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u> <u>인정되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u></p> <p>제8조(심의) ----- <u>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u> -----.</p> <p>제10조(위원회 구성)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④(현행과 같음) ⑤----- <u>예산담당</u> ----- -----.</p> <p>⑥(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재정법 】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

제29조(공공기관의 범위 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으로 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에서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제외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모든 재정지출을 말한다.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 2004. 3. 11 조례 제154호
 개정 2005. 5. 2 조례 제203호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2005. 12. 30 조례 제223호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 2006. 7. 1 조례 제262호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있어서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사회단체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2.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지원범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시장은 매년 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지원계획을 일정기간동안 시보, 인터넷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 및 접수) ①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립한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금지원을 신청한 사회단체의 장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심의)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소관 부서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통보)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별 보조금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를 당해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

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장
2. 위촉직 위원 : 시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위원이 궐위 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민자치담당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단체 운영비지원에 관한 사항
2.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지원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 하는 사항

제12조(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제3항의 위촉직위원에 대한 심의안건 관련여부는 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사회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보고 등)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내용 및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매년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별도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양주시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 5. 2 조례 제203호 행정기구설치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 칙(2005. 12. 30 조례 제223호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7. 1 조례 제262호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자치정보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② 내지 ①생략